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4
----------	-----

제출년월일 : 2001년 4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개정이유

읍·면·동기능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고지서의 효율적 교부위하여 행정하부조직이용 근거마련하고,
기타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

※ 지방세법 개정 : 2000. 12. 29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2000. 12. 30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관련조항 통합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관련조항이 제천시세조례 제8조와 제14조의 2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8조로 통합

○ 행정하부조직이용 고지서송달시 범위 등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행정하부조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류송달시 수수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신설

○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관련 조문의 정비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조항신설

현행 시세조례중 도시계획세관련부분에 과세대상조항이 없어 지방세법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세과 세대상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

-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개정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 입법예고 : 2001. 3. 16. ~ 2001. 4. 5.(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제천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재, 시.읍.면.동 게시판 게시
 - 제출의견 : 행정하부조직이용 고지서송달시 지급대가의 명칭을 입법예고안에서는 “송달 수당”으로 하였으나, 보상적 성격이므로 “송달 수수료”라는 명칭이 더 바람직
 - 처리결과 : 고지서송달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므로 의견받아 들여 “송달 수수료”로 변경

- ※ 불 임 : 1. 참고법령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끝.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중 제1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중 “운영 등”을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①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시장이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중 “제200조”를 “제201조”로 한다.

제43조중 “제201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47조중 “제167조”를 “제157조”로 한다.

제49조중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중 제목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한다.

제50조 제1항중 “제164조”를 “제154조”로 한다.

제3장 제1절에 제8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 2(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

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영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p>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⑥ (생략)</p> <p>⑦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p>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함께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⑥ (현행과 같음)</p> <p>⑦ ----- 조직과 운영 -----.</p>

현 행	개 정
<p>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제36조의3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수 있다.</p> <p>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현 행	기 정
(신 설)	<p>제16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p> <p>① 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 라 함은 시장이 통.리.반장 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 다.</p>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 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 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 과세신청) - 제201조-

현 행	기 정
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7조 -----.
② (생 략)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시부과) -----.
제50조(확정신고와자진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 제154조 -----.

현행	기준
<p>② (생략)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신설)</p>	<p>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2조의2(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영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p>

참 고 법령

지방세법

第51條의2 (書類送達의 方法) ① 第51條의規定에 依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依한다.

第235條 (課稅對象) ① 都市計劃稅는 都市計劃事業에 請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告示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있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 또는 建築物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土地 또는 建築物 所在地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 土地로서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地形圖面이 고시된 公共施設用地 또는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土地 중 地上建築物·골프場·遊園地 기타 利用施設이 있는 土地외의 土地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5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납세고지서 · 납부통지서 · 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5조 (토지 · 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증전 · 담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

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 銀收와 관련하여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외무자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99. 12. 28 신설)

세액

(當令) 제146조의15[인분기준] ① 법 제196조의1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분기준은 시·군별 비행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하되,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인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각 시·군별 세액 = 당해 월 주행세 징수총액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

제146조의16[특별징수외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외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외무자"라 한다)에게 충금함과 동시에 그 충금내역과 제146조의14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된 특별징수외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외무자로부터 충금받은 주행세액과 차차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관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82條의 9[특별징수외무자의 납입 등] ① 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충금 내역통보는 별지 제77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보는 별지 제77호의6서식에 의한다.

지방세법

第4節 農業所得稅
(2000. 12. 29 본절 전면개정)

第1款 通則

第197條[定義] 이 절에서 "農業所得"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農業증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이하 이 절에서 "作物"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所得을 말한다.

第198條[納稅義務者 등] ① 農業所得이 있는 자는 그 作物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市·郡에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人 이상이 공동으로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비율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된 農業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그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畜農組合法人이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出資한 農民이 그 持分에 의거해 分配되었거나 分配된 農業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그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世帯안에서 同居하는 故人家族이 공동으로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納稅義務者의 所得으로 보아그 주된 納稅義務者가 당해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第4節 農業所得稅

★ 編者註 : 제147조 ~ 제160조 전면 개정

(2000. 12. 29)

第1款 通則

第147條[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제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제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배에 한한다)을 말한다.

第148條[주된 납세외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외무자"라 함은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제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第4節 農業所得稅

★ 編者註 : 2000. 12. 본절 전면 개정

지방세법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200條

지방세법 시행령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150條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83條

316

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納稅義務者が 死亡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한다.

④ 納稅義務者が 주소를 韓外로 移轉함으로 인하여 出國日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農業所得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出國日까지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한다.

第200條[國家 등에 대한 非課稅]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外國政府가 공용에 사용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韓이 大韓民國政府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1條[총도구분에 의한 非課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學校·孤兒院·養老院·修女院·寺刹·敎會 등이 権術·試驗·學習 또는 自由消費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 制作하는 경우의 農業所得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山林組合(山林與를 포함한다)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制作하는 山林用 목록本에서 생기는 農業所得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所得

第150條[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제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제배작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제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83條[비과세 신청] ① 영 제150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0조 제2항 및 제1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稅의 非課稅는 納稅義務者の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第202條[기간·간석등에 대한 非課稅] ① 공유주민의 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입·간석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農地(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作物을 재배하는 土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地造成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畜農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天災·地變·旱魃·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農地의 形質이 변경됨으로써 평폐한 땅이 되거나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作物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평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평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非課稅稅期를 다시 평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평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稅의 非課稅는 納稅義務者の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第149條[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

第151條[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제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제배작물·인가 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제기전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제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적관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지방세법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208條

지방세법시행령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154條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89條

322

에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품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판관수 등 작품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품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상용하는 비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第3款 신고와 납부方法 등

第208條[신고와 납부] ① 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稅稅期間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稅稅期間중의 農業所得金額을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제206조의 규정에

第3款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第154條[신고와 납부]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품제세지·작품명·생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품제세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품제세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품제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사유로 인하여 작품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필요경비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제8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89條[신고와 납부] ① 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별지 제84호서식의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의한 算出稅額(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市長·郡守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품의 제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품의 제세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제세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품제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第155條[결정과 징수] ①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209條[결정과 징수] ① 市長·郡守는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別로 신고한 農業所得과 신고하지 아니한 農業所得에 대하여 稅稅期間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農業所得稅額을 확정결정한다.

② 市長·郡守는 納稅義務者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210條[수시부과] ① 市長·郡守는 農業所得세 納稅義務者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稅稅標準과 세액을 결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할 수 있다.

1. 死亡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農業所得稅를 포함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지방세법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211條

지방세법 시행령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156條

第3章 市·郡稅 第4節 農業所得稅 第90條

324

- 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사용이 있는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시 稅務期間에 개시일부터 당시 사용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務標準과 세액을 결정하여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稅務標準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農業所稅率를 확정결정할 때 이를 稅務標準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 第211條【農地 및 農業施設의 변경신고 등】 ① 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農地 또는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物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는 納稅義務者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農地 및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農業所得稅率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 第212條【課稅登記 등】 ① 市長·郡守는 農業所得稅 納稅義務者에 대한 課稅登記을 비치·정

第156條【수시부과】 ① 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용”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징수 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할부 또는 포함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③ 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第157條【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등】 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한 경우
2. 작물의 재배자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자로 변경된 경우
3. 폐지자가 비폐지자로 되거나 비폐지자가 폐지자로 변동된 경우

第90條【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날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

- 第91條【농업소득세과세대장】 ① 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

리하여야 한다.

- ② 市長·郡守는 稅務標準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稽核義務者에게 日記帳 등의 資料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稽核義務者가 생산한 作物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市長·郡守로부터 稅務標準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4款 惜則

- 第213條【農業所得調查委員會의 설치】 ① 收入金額·農業所得金額 그 밖에 農業所得稅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市·邑·面에 農業所得調查委員會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調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으로 정한다.

- ③ 農業所得調查委員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 農業所得調查委員들은 당시 市·邑·面안의 稽核義務者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第214條【所稅의 부과금지】 農業所得稅는課稅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所稅를 부과하지 아니

第4款 보칙

第158條【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풍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세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 ④ 위원은 당시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 ⑤ 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대체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상임으로 위임한 자로는 차석이나

리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는 제1항의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관하여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第92條【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주전】 ① 시의 풍장, 읍·면장은 법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의 풍장,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되는 자의 성명·연령·경력·직업·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시의 풍장, 읍·면장은 매년 5월 및 9월 중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해촉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 第93條【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정은 시장·군수에게 보고·준

제 332 호

제 천 시 보

2001. 3. 16(금)

제천시 공고 제2001-129호

제천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16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하부조직이용하여 고지서송달시 하부조직의 범위 및 수당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시 일선세무인력감소예상에 대비하고

2000. 12. 30.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조항 통합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조항인 제천시세조례 제8조와 제14조의 2의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여 제8조로 통합

○ 행정하부조직이용 고지서송달시 하부조직의 범위 및 송달수당 지급근거규정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송달의뢰가능한 행정하부조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지서송달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신설

○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관련 규정의 지방세법근거 조문 등 변경

4.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게재 및 개정안 세정과 비치(요청시 열람가능)

○제천시 홈페이지 : <http://www.jecheon.chungbuk.kr>

제 332 호

제 천 시 보

2001. 3. 16(금)

5.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세정과장, 전화 640-6182, FAX 640-6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No. : 193] [Writer : 세정과] [Date : 01-03-17 오] [Visited : 1]

제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공고 제 2001 - 129 호

제천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3월 16일

제천시장

제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하부조직이용하여 고지서송달시 하부조직의 범위 및 수당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기능전환시 일선세무인력 감소에 상에 대비하고 2000.12.30.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조항 통합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조항인 제천시세조례 제8조와 제14조의 2의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여 제8조로 통합
- 행정하부조직이용 고지서송달시 하부조직의 범위 및 송달수당 지급근거규정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송달 의뢰가능한 행정하부조직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지서송달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신설
- 지방세법령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관련 규정의 지방세법근거 조문 등 변경

4.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게재 및 개정안 세정과 비치 (요청시 열람가능)

- 제천시 홈페이지 : <http://www.jecheon.chungbuk.kr>

5.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세정과장, 전화 640-6182, FAX 640-6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